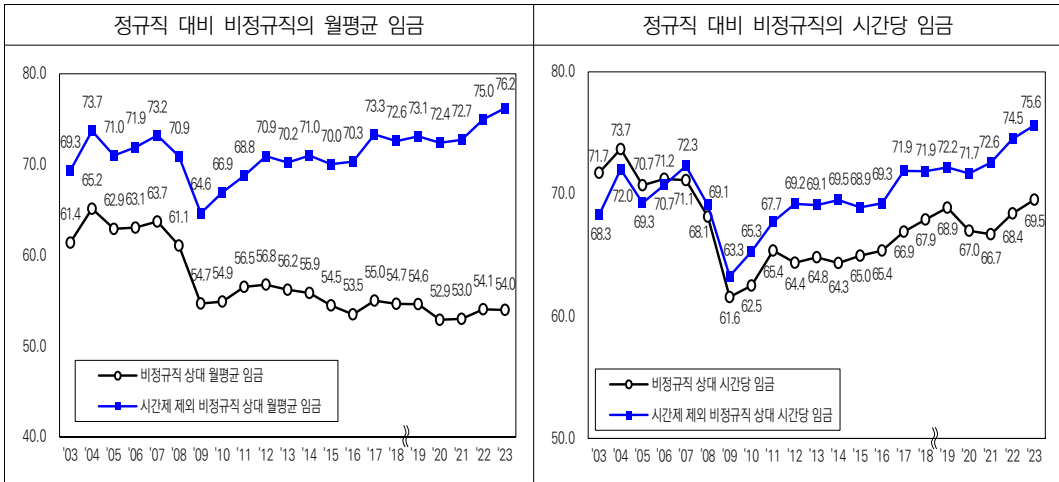


# 최근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변화 분석

- 이 글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추이와 상대임금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변화를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별로 분해하여 어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상대임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함.
  - 자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와 고용노동부의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를 이용함.

[그림 1]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(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)

(단위 : %)



주 : 1)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(6~8월) 평균 임금임.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.  
 2) 시간당 임금 = 월평균 임금 / (평소 1주당 근로시간\*30.4/7)  
 3) 좌 : 정규직 월평균 임금=100, 우 : 정규직 시간당 임금=100  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-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임금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의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와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의 비정규직 중 단시간 근로를 제외하고,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을 분석하였음<sup>1)</sup>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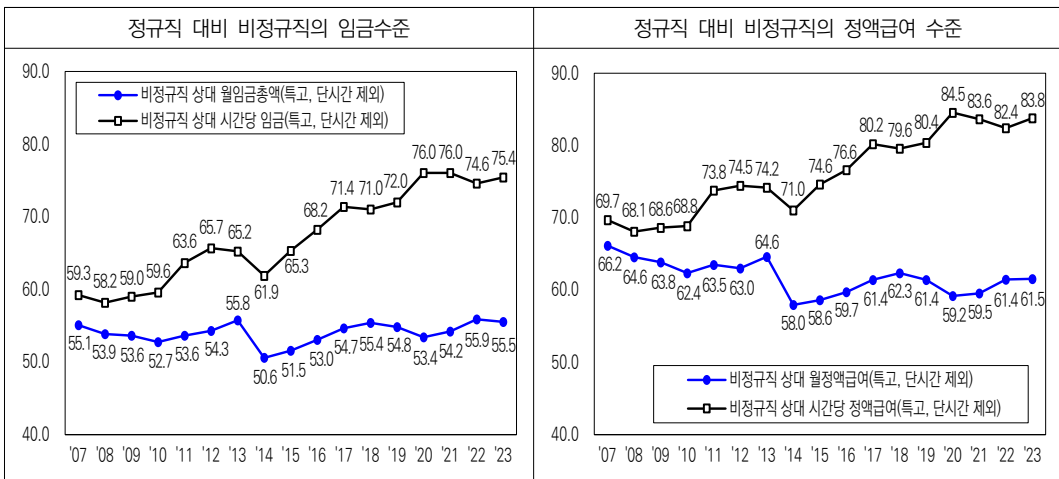
○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임금 추이와 상대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상대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추이가 상반된 경향을 보임(그림 1).

- 월평균으로 살펴본 전체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07년까지 정규직의 약 60%대 수준이었으나, 2008~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54.7%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까지 50%대 초반을 유지함.
- 시간당으로 살펴본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61.6%로 감소한 후 2023년 69.5%까지 증가함.

○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, 2022년에는 정규직 대비 75.0%, 2023년에는 76.2%로 전년대비 각각 2.3%p, 1.2%p 상승하였음.

[그림 2]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(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/특고, 단시간근로 제외)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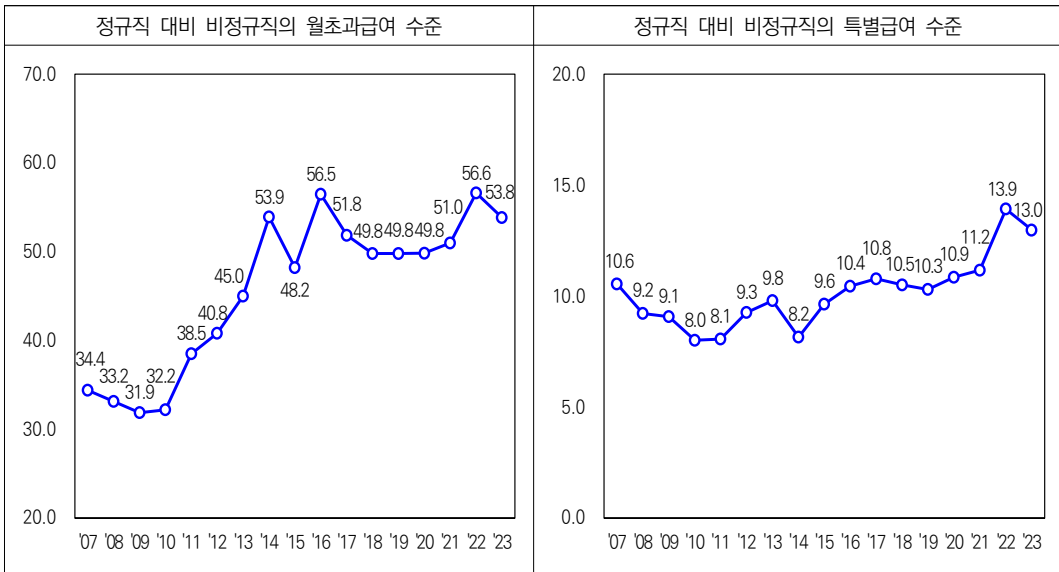
- 1)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근로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.
- 2) 월임금총액=정액급여+초과급여+(전년도특별급여/12)
- 3) 특별급여는 월간 변동성이 커서 연간으로 조사되어야 하나 조사 기준 기간이 매년 6월이므로 당해연도 연간특별급여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연간특별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6월 임금에 합산함.
- 4) 시간당 임금총액 = 월임금총액/총근로시간(=소정실근로시간+초과실근로시간), 시간당 정액급여 = 정액급여/소정실근로시간.
- 5) 좌 : 정규직 월임금총액=100,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=100, 우 : 정규직 월정액급여=100,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=100.
- 6) 참고로, 중위임금 기준 정규직 대비 특고, 단시간 제외 비정규직의 월정액급여 수준은 2021년 69.4%, 2022년 69.6%, 2023년 68.6%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, 각 연도.

1)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는 가구 조사이며,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의 조사 대상은 사업체임.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에서 월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(6~8월) 평균임금이며,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에서 월임금은 6월 기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.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와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는 조사 대상, 조사 기간, 조사 범위(산업)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자료의 임금 추이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.

- 주간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시간제 근로자 제외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 추세가 나타나며, 2023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1.1%p 증가한 75.6%임.

[그림 3]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수준(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/특고, 단시간근로 제외)



- 주 : 1)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근로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.
- 2) 초과급여=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.
- 3) 특별급여=전년도특별급여액/12.
- 4) 좌 : 정규직 월초과급여=100, 우 : 정규직 특별급여=100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, 각 연도.

○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상대임금을 살펴보면(그림 2), 특고, 단시간 제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 월임금은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- 월임금에서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만을 기준으로 보면, 특고, 단시간 제외 비정규직의 상대 정액급여는 상대 월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가 상대 월임금 격차를 낚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-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초과급여 수준은 2014년 이후로 40% 후반~50% 초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 정도이며, 비정규직의 특별급여는 정규직의 10% 초반 수준임(그림 3 참조).
-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시간당 임금 추이를 보면(그림 2), 특고,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 시간당 임금은 2014년 61.9%에서 2017년 71.4%로 상승하였고, 2020년 이

후 정규직의 약 74~76% 수준을 유지하였음.

-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2014년 70.1%에서 2017년 80.2%로 상승하였고 2020년 이후 정규직의 약 82~84% 수준임.

○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변화에 각 세부 고용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, 최근 비정규직 상대임금 상승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(표 1 참조).

- 2020년에는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하락하였는데,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 증가는 비정규직 상대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반복갱신\* 근로에서 고용 비중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함.

\* 반복갱신 :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형태

〈표 1〉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 임금 변화 분해(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)

		2019→2020	2020→2021	2021→2022	2022→2023
특수형태근로	근로자 비중 변화	0.35	-0.02	-0.48	0.38
	상대임금 변화	-0.43	0.14	0.05	0.51
가정내 근로	근로자 비중 변화	0.11	0.12	0.10	-0.13
	상대임금 변화	0.01	0.14	0.03	-0.06
파견근로 및 용역근로	근로자 비중 변화	-0.65	0.05	-0.57	0.22
	상대임금 변화	0.20	-0.04	0.23	0.04
일일근로	근로자 비중 변화	1.42	-0.17	-1.68	-1.26
	상대임금 변화	-0.31	0.71	0.31	0.03
기간제	근로자 비중 변화	2.56	1.59	2.95	2.81
	상대임금 변화	1.43	-0.60	1.11	0.28
비기간제 중 반복갱신	근로자 비중 변화	-4.96	-0.83	0.51	-1.38
	상대임금 변화	-0.83	-0.34	0.04	-0.06
비기간제 중 기대불가	근로자 비중 변화	0.37	-0.56	-0.38	-0.16
	상대임금 변화	0.03	0.16	0.04	-0.01
시간제 제외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 임금 변화		-0.71	0.34	2.25	1.23

주: 1) 비정규직 모든 근로형태는 유형 간 중복을 제거한 후,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.  
 2)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 임금 변화는 전년대비 상대 월평균 임금 증감(%p).  
 3) 20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영향으로 2019년 이후의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구분하여 비교 가능하므로 2020년 이후 분해 결과만 제시하였음.  
 4) 비정규직의 상대 월평균 임금 변화 분해는 부록을 참고  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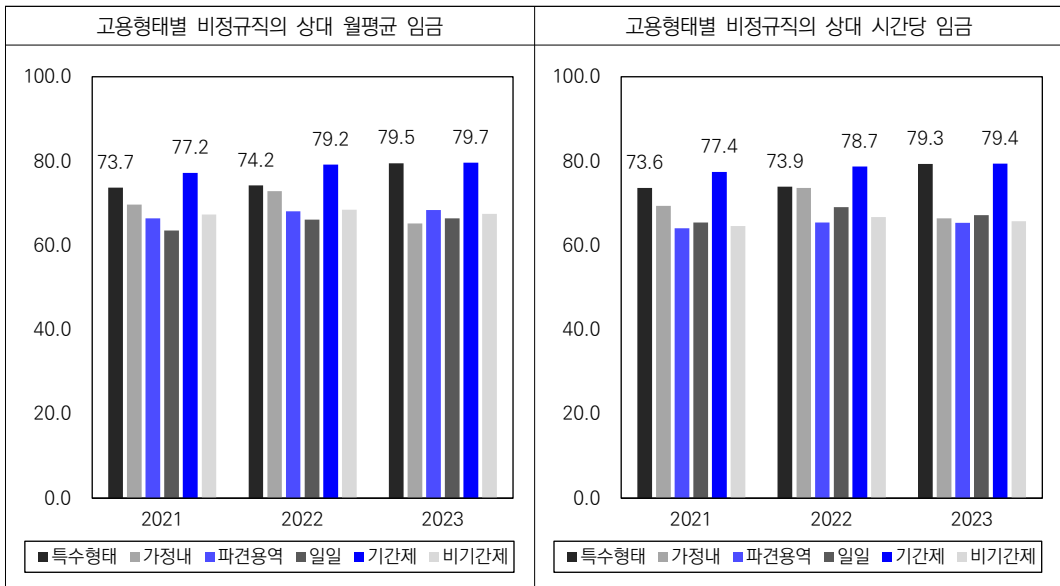
-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 시간당 임금 변화 분석 결과도 월평균 임금 변화 분해 결과와 유사함.

○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상대 월평균 임금은 2023년 기준 79.7%, 상대 시간당 임금은 79.4%로 다른 근로형태에 비해 상대임금 수준이 높은 편임(그림 4 참조).

- 기간제 근로자는 2023년 기준 보건사회복지업(16.8%), 제조업(16.0%), 교육서비스업(8.9%) 등에 주로 분포하고, 전문직 비중이 높음(그림 5 참조).
- 기간제 근로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54.2%, 여성이 45.8%이고, 20대~60세 이상 연령층에 각각 약 20% 전후로 분포하여 성별이나 연령대별 비중 차이는 크지 않음.
-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업과 직종에서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의 상대 임금수준을 보면, 보건사회복지업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약 80% 후반~90%대 수준이고, 제조업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80%대 수준임(그림 6 참조).

[그림 4]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수준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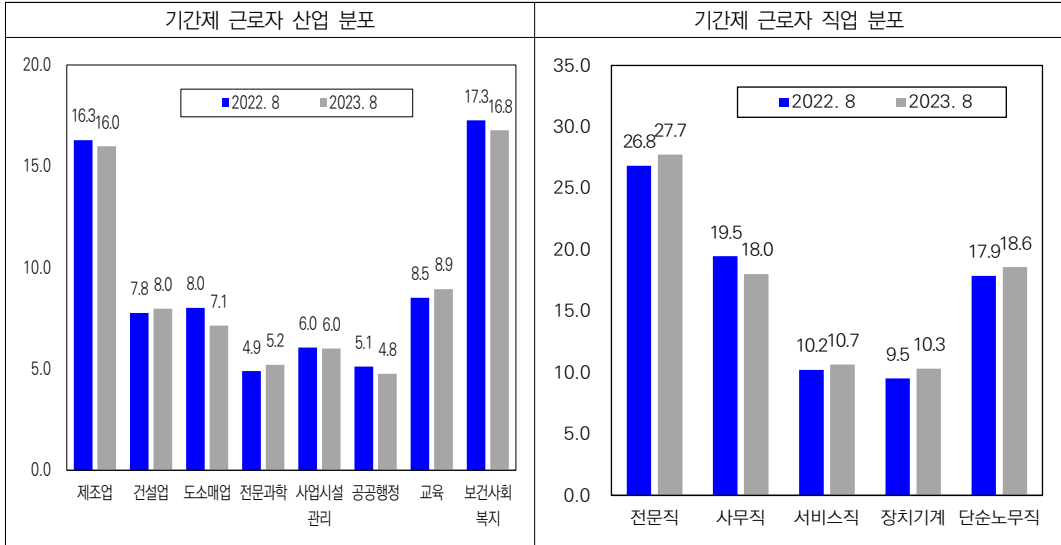
주 : 1) 다른 고용형태와 중복되지 않고, 시간제 근로도 제외된 기간제임.

2) 좌 : 정규직 월임금총액=100, 우 : 정규직 시간당 임금=100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[그림 5]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 및 직업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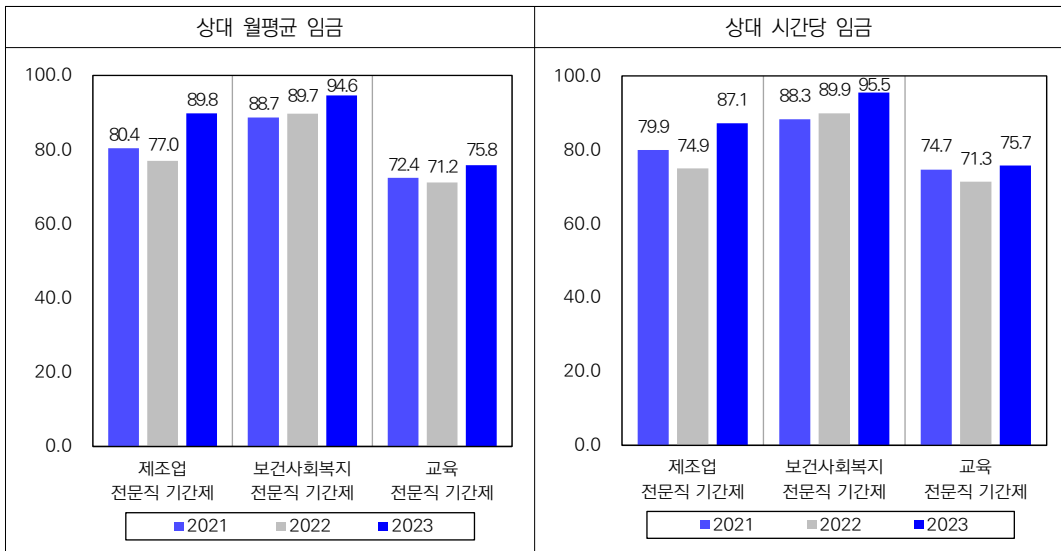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주 : 다른 고용형태와 중복되지 않고, 시간제 근로도 제외된 기간제임.  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[그림 6] 제조업, 보건사회복지, 교육서비스업에서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

(단위 : %)



주 : 1) 다른 고용형태와 중복되지 않고, 시간제 근로도 제외된 기간제임.  
 2) 좌 : 각각 제조업 전문직 정규직 월평균 임금, 보건사회복지 전문직 정규직 월평균 임금, 교육서비스업 전문직 정규직 월평균 임금 = 100, 우 : 각각 제조업 전문직 정규직 시간당 임금, 보건사회복지 전문직 정규직 시간당 임금, 교육서비스업 전문직 정규직 시간당 임금 = 100  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, 각 연도 8월.

## [참고문헌]

고용노동부(2021),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,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.  
통계청(2023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.

[부 록]

비정규직 상대임금 변화는 비정규직 내 세부 고용형태 비중 변화에 의한 부분과 세부 고용형태의 상대임금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음.

■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변화

$$= \sum_i [\Delta \frac{E_i}{E_N} * \frac{w_i}{w_R} + \frac{E_i}{E_N} * \Delta \frac{w_i}{w_R}]$$

$$= \sum_i [i \text{의 근로자 비중 변화에 의한 효과} + i \text{의 상대임금 변화에 의한 효과}]$$

$i$ =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,  $N$ =비정규직,  $R$ =정규직,

$\frac{E_i}{E_N}$ =비정규직 중  $i$  고용형태 근로자 비중이며  $\sum_i \frac{E_i}{E_N} = 1$ ,  $\frac{w_i}{w_R}$ =정규직 대비  $i$  고용형태의 상대임금

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유형 간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세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. 따라서 각 근로형태를 비정규성이 강한 순서\*로 근로형태 간 중복을 제거한 후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여,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전체 규모와 시간제를 제외한 각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의 합이 일치하도록 하였음.

\* 비정규성이 강한 순서 : 특수형태 > 가정내 > 파견·용역 > 일일 > 한시적 > 시간제

(이기쁨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